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9

발의연월일: 2024. 7. 2.

발 의 자:이용선・황 희・박지원

김남근 • 박홍근 • 박해철

복기왕 • 유건영 • 황명선

고민정 • 이재정 • 김문수

오세희 • 이기헌 • 이재강

박희승 · 조계원 의원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투척, 우리 군의 확성기 재개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특히, 대법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6. 2. 25. 선고 2015다247394판결).

그런데, 2023. 9. 2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0헌마1724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실 정임.

따라서,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

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자를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5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2(전단등 살포 신고) ① 제24조제1항제3호의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전단등의 살포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제24조제1항을"을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단등을 살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4조의2(전단등 살포 신고) ①
	제24조제1항제3호의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전
	단등의 살포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u>하여야 한다.</u>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제25조(벌칙) ① <u>제24조제1항제1</u>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호 및 제2호를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	
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	
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u><신 설></u>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단등을
	살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u> 처한다.</u>
②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